

시행일:2019.03.28. 입력자:장다결 확인자:원대회

대학혁신지원사업운영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가천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(이하 ‘사업’)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조직과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조직)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직을 둔다.

1. 대학혁신지원사업운영위원회(이하 “사업운영위원회” 라 한다)
2. 대학혁신지원사업자체평가위원회(이하 “자체평가위원회” 라 한다)
3. 대학혁신지원사업실무위원회(이하 “사업실무위원회” 라 한다)
4. 교육혁신원

제3조(사업운영위원회) ①사업추진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심의하고,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·운영하기 위하여 사업운영위원회를 둔다.

②사업운영위원회는 총장이 위촉하며 교무위원 8인과 외부전문가 2인을 포함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정한다.

③위원의 임기는 사업기간으로 한다.

④사업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사업추진 총괄 심의·조정에 관한 사항
2. 사업의 기본 및 세부추진 계획 수립
3. 사업계획 심의·의결에 관한 사항
4. 사업추진 사항 점검에 관한 사항
5. 사업추진 성과에 관한 사항
6. 자체평가 결과 심의 및 환류에 관한 사항
7. 사업비 집행 가이드라인 제정에 관한 사항
8. 자체평가 실시 후 보완 사항 피드백에 관한 사항
9. 기타 본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

제4조(자체평가위원회) ①사업운영 결과에 대한 성과평가와 환류를 위해 자체평가위원회를 둔다.

②자체평가위원회는 총장이 위촉하며 외부전문가 2인을 포함 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정한다.

③위원의 임기는 사업기간으로 한다.

④자체평가위원회는 사업성과에 대한 연차평가 및 종합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필요시 수시평가를 실시한다.

⑤자체평가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자체평가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2. 연차평가, 종합평가, 수시평가 시행에 관한 사항
3. 자체평가 환류에 관한 사항
4. 기타 본 사업의 성과평가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

제5조(사업실무위원회) ①사업 추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사업실무위원회를 둔다.

②사업실무위원회는 사업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며 관련부서 팀장 및 담당자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교육혁신원장으로 한다.

③위원의 임기는 사업기간으로 한다.

④사업실무위원회는 사업추진, 성과평가 등 사업추진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원한다.

제6조(교육혁신원) ①사업의 중앙관리를 위해 교육혁신원에서 업무를 관장한다.

②교육혁신원은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사업의 총괄적인 수행, 관리, 지원에 관한 사항
2. 사업의 기획·심의·추진에 관한 사항
3. 사업비 예산 책정 및 집행에 관한 사항
4. 사업의 홍보 및 확산에 관한 사항
5. 사업 관련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
6. 기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등

제7조(사업추진 현황보고)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교육혁신원은 사업추진 상황을 총장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.

제8조(사업추진 현황의 공개) ①사업의 추진현황과 결과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②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교육부 등 관계기관의 자료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성실히 응해야 한다.

제9조(전담조직과 사업부서 간의 협조) 이 규정에서 정한 전담조직(교육혁신원)과 세부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실무 사업부서들은 서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사업의 효과를 향상시킨다.

제10조(예산 집행) 사업비 예산의 집행 및 관리는 사업 주무부처(한국연구재단)의 ‘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비 집행 및 관리기준’을 준용하되,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제11조(세부사항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제규정을 준수하되, 사업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사업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9년 03월 28일부터 시행한다.